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9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포상금 지급범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,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의 참여를 촉구하며, 비현실적인 포상금을 현실화하고, 세출예산 절감 등 비예산사업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과년도 미수액 범위의 개념이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하고,
-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,
-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,
-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,
- 대장비치 및 포상금 지급신청 범위를 변화된 업무와 일치하게 조정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관계부처승인 :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필요 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호중 “제안으로”를 “제안및 노력으로”로 한다.

1. 회계연도말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을 포함한다)

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헌신적 노력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한 자

가. 1건당 20,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매 건당 1,000원, 20,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 건당 100분의 5, 다만 1건당 지급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.

나. 창발적인 노력과 비예산사업으로 100만원 이상의 순수 균세 증대 시 징수액의 100분의 5

2. 균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 : 징수세액의 100분의 10

제4조 제1항중 “읍·면장은”을 “실과소장 및 읍·면장은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읍·면장은”을 “실과소장 및 읍·면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범위)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<u>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창발적인 제안으로</u>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</p> <p>제3조(지급구분)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</p> <p>1. <u>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</u> <u>1건당 200원 이상 2,000원 미만</u>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, 2,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</p> <p>2. <u>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</u> : 징수세액의 100분의 10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대장비치)① <u>읍·면장은</u></p> <p>제5조(포상금지급신청) ① <u>읍·면장은</u>-----.</p>	<p>제2조(지급범위)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회계연도말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채납액을 징수한 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을 포함한다)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제안 및 노력으로</u> -----</p> <p>제3조(지급구분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헌신적 노력으로</u> 세수확보에 기여한 자 가. 1건당 20,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매 건당 1,000원, 20,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 건당 100분의 5, 다만 1건당 지급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. 나. <u>창발적인 노력과 비예산사업으로</u> 100만원 이상의 순수 균세증대 시 징수액의 100분의 5</p> <p>2. <u>균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</u> : 징수세액의 100분의 10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대장비치)①<u>실과소장 및 읍·면장은</u>--.</p> <p>제5조(포상금지급신청) ① <u>실과소장 및 읍·면장은</u>-----.</p>